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1항).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3항 및 제6항).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3 및 안 제28조의14).

II. 검토의견

1.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명확화 필요

안 제28조의15는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행법의 주요 규제 조항들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적용 제외의 대상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제18조·제19조),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제20조의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한(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5조의2),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제한(제28조의8) 등 총 10개 조항임.

상기 조항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의 제한 규정으로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반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문안은 ‘제28조의12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기만 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앞서 언급한 10개 조항 전체가 일괄적·자동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당초 수집 목

적 외의 이용을 승인(제28조의12에 따른 심의·의결)하는 것과, 그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보호 조항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분리될 필요가 있는바, 개별 사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면제가 필요한 조항을 개별 사안별로 심의·의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함.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8조의15(<u>특례 이용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배제</u>) 제28조의12에 따라 <u>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u>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15(<u>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u>) -----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u>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 ----- ----- ----- -----.

2. 인공지능기술의 정의 및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신설

안 제28조의12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인공지능기술” 용어는 신설하는 조문인 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4까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나, 개정안은 해당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음.

“인공지능기술”의 의미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부여의 요건이 되므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상의 “인공지능기술”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8조의1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제28조의14는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7조의9에서 규정하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의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u>9.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u>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6. (생략) 6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현행과 같음) <u>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u> <u>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u>
7. ~ 9. (생략) 9의2. (생략) 10. ~ 16.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9의2. (현행과 같음) 10. ~ 16.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